

## e편한세상 장유2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김해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써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완납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08.)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2015년 7월 8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 개정(2015.04.01)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이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도 당첨자에 해당).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2009.04.0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05.19)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 우선 배정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완화 : 기존 "1,2,3순위" 방식을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됨.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 1명만 청약가능함.)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 됩니다.
  -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규모에 청약가능하며, 주택규모변경 기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 폐지
  - ☞ 민영주택 가정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24623호(2016.07.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13-3 외 56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4~25층 아파트 7개동 5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실사용 대지면적 24,132.0000㎡ 중 아파트 지분 면적 23,984.5459㎡, 근린생활시설 지분 면적 147.4541㎡

☑ 공급대상 (단위 : ㎡, 원)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 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공용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59.9049	59.9049	22.4894	82.3943	2.4056	25.5517	110.3516	36.9297	6	6	6	2	48	68	4	2018년12월
		63.2138	63.2138	23.3339	86.5477	2.5385	26.9631	116.0493	38.9695	4	4	4	1	36	49	3	
		74.9140	74.9140	24.0869	99.0009	3.0084	31.9537	133.9630	46.1824	18	18	18	5	122	181	9	
		84.9329	84.9329	26.3439	111.2768	3.4107	36.2272	150.9147	52.3588	21	21	21	6	145	214	11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공급금액

주택형 (㎡)	해당동	일반분양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차 (16.08.29)	1회차 (16.11.21.)	2회차 (17.03.20.)	3회차 (17.07.20.)	4회차 (17.11.20.)	5회차 (18.03.20.)	6회차 (18.07.20.)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일)			
59.9049	104/105	68	2	1층	56,091,063	152,958,937	209,050,000	10,000,000	10,905,000	20,905,000	20,905,000	20,905,000	20,905,000	20,905,000	20,905,000	20,905,000	62,715,000	
			4	2층	56,091,063	158,688,937	214,780,000	10,000,000	1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21,478,000	64,434,000
			4	3층	56,091,063	160,988,937	217,080,000	10,000,000	1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21,708,000	65,124,000
			4	4층	56,091,063	162,178,937	218,270,000	10,000,000	1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21,827,000	65,481,000
			20	5~9층	56,091,063	166,448,937	222,540,000	10,000,000	1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22,254,000	66,762,000
			34	기준층	56,091,063	168,698,937	224,790,000	10,000,000	1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22,479,000	67,437,000
63.2138	104/105	49	1	1층	59,162,705	160,167,295	219,330,000	10,000,000	11,933,000	21,933,000	21,933,000	21,933,000	21,933,000	21,933,000	21,933,000	21,933,000	65,799,000	
			3	2층	59,162,705	165,587,295	224,750,000	10,000,000	1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22,475,000	67,425,000
			3	3층	59,162,705	167,707,295	226,870,000	10,000,000	1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22,687,000	68,061,000
			3	4층	59,162,705	169,837,295	229,000,000	10,000,000	1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22,900,000	68,700,000
			15	5~9층	59,162,705	174,317,295	233,480,000	10,000,000	1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23,348,000	70,044,000
			24	기준층	59,162,705	176,677,295	235,840,000	10,000,000	1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23,584,000	70,752,000
74.9140	101/102/103/ 104/106/107	181	1	1층	69,875,260	180,764,740	250,640,000	10,000,000	15,064,000	25,064,000	25,064,000	25,064,000	25,064,000	25,064,000	25,064,000	25,064,000	75,192,000	
			9	2층	69,875,260	186,954,740	256,830,000	10,000,000	1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25,683,000	77,049,000
			9	3층	69,875,260	189,384,740	259,260,000	10,000,000	1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25,926,000	77,778,000
			9	4층	69,875,260	191,804,740	261,680,000	10,000,000	1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26,168,000	78,504,000
			45	5~9층	69,875,260	196,934,740	266,810,000	10,000,000	1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26,681,000	80,043,000
			108	기준층	69,875,260	199,624,740	269,500,000	10,000,000	1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26,950,000	80,850,000
84.9329	101/102/103/ 104/106/107	214	1	1층	79,155,980	202,554,020	281,710,000	10,000,000	18,171,000	28,171,000	28,171,000	28,171,000	28,171,000	28,171,000	28,171,000	28,171,000	84,513,000	
			11	2층	79,155,980	209,524,020	288,680,000	10,000,000	1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86,604,000
			11	3층	79,155,980	212,254,020	291,410,000	10,000,000	1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29,141,000	87,423,000
			11	4층	79,155,980	214,974,020	294,130,000	10,000,000	1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29,413,000	88,239,000
			55	5~9층	79,155,980	220,734,020	299,890,000	10,000,000	1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29,989,000	89,967,000

		125	기준총	79,155,980	223,764,020	302,920,000	10,000,000	20,292,000	30,292,000	30,292,000	30,292,000	30,292,000	30,292,000	30,292,000	90,876,000
--	--	-----	-----	------------	-------------	-------------	------------	------------	------------	------------	------------	------------	------------	------------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 개정(2015.04.0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당사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토지비 감정평가 및 토지비 가산비용,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산정하여 책정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별도계약품목(추가선택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천하여 추천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분양가격 중 건축비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16. 07. 13(수) (10:00 ~ 14:00)	e편한세상 장유2차 건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6. 07. 13(수) (17:00)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체될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일정 일시에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천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천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순으로 추천함
- **특별공급 입주자지속(청약자격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는 제외함],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일반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자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지속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 당첨자 관리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은 부활)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천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시 1층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 우선 배정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중)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 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공급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59.9049 (68세대)	63.2138 (49세대)	74.9140 (181세대)	84.9329 (214세대)	합 계 (512세대)
일반 특별공급(85㎡이하 10%)	6	4	18	21	4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6	4	18	21	49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10%)	6	4	18	21	49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2	1	5	6	14
계	20	13	59	69	161

▶ 일반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배정기준	비고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2 이내	미신청분은 장애인 및 기타 일반특별공급대상자로 물량 배정
장애인 및 기타 일반특별공급	상기 배정 잔여세대	잔여물량은 일반특별공급 경쟁 초과 물량에 우선 공급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2013년 05월 3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건설량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변경됨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단, 배정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적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신청시 배정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정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가입 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
- **소득기준**

※ 2015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구분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 원 이하	5,393,154 원 이하	5,475,403 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779,998 원 이하	6,471,784 원 이하	6,570,483 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구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구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처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판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무직자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세무서,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의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청(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청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점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li> <li>·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단독세대 등 해당세대)</li> </ul> <p>-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p> <p>-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발급)</p> <p>※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는 제외함</p>
	일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li> <li>-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li> <li>- 배정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li> <li>-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li> <li>-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에 한함)</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li> <li>-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li> <li>-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li> <li>-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li> </ul> <p>[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감</li> </ul>

※ 1.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 공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0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자에게 공급한다.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2015년 7월 8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인 경우, 사업주체에 부적격사실 소명 및 청약 계좌부활 신청을 통해,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당첨자발표
영주택	1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적용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김해시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2016.07.14 (목)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이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발표일시 : 2016.07.21(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분양홍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또는 매체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및 전화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총액이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제) ※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2016.07.15 (금)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입력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로 주택규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주택규모를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김해시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09.0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천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천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비고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본인청약 가점점수 = ①+②+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위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1.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2.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총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태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5.19)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1층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최저층) 최하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청약 신청접수시 1층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람.

3.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 청약금은 별도로 없으며, 청약통장으로 대체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정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천제로 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천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천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NH농협(단위농협제외),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중 बैं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인터넷 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2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대상	청약신청금	접수장소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만원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apt2you.com	-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बैं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금액 이상 잔액 유지) ※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총16개 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단위농협제외),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
		은행창구 청약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전 은행	- 창구청약시 <b>해당지역</b>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07.22(금)]부터 (시간 :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① 인터넷 청약 신청자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② 은행 창구 청약자 -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단, 청약자 본인의 접수은행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 신청자 창구 환불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제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li>·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li> </ul>
공통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로 입주자를 선정 한 후,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li> <li>- <b>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b></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li>·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li> <li>·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함</li> </ul>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당첨자 사실 조회
	이용기간	2016.07.21~ 2016.07.30(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1369[서비스번호 : 5#]
	이용기간	2016.07.21~ 2016.07.30(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07.21(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16.07.26(화)~2016.07.28(목) / 3일간	당사 견본주택	055-314-28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003-015360	국제자산신탁(주)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종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인계약 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li> <li>· 계약금 입금확인증(※ 분양대금 입금완료후 입금증 제출 / 별도품목 계약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약금 무통장 입금표를 별도 지참)</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사실 확인서 1통 인감도장</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li> <li>-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li> <li>-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정에 산정한 분)</li> <li>-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li> <li>-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li> <li>-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li> <li>-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통</li> <li>-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건본주택 비치)</li> </ul> </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자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li>· 해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li> <li>·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li> </ul>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li> </ul> </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 계좌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 사항임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계약금 2차 또는 잔금 일부 포함)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기간내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융자받을 경우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개시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납부하기로 함 (중도금 무이자)

##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1개소), 휴게공간 2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등

## ■ 기 타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 현관중문 공틀 등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타일,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갈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바닥마감 등	바닥난방 + 시멘트 율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현관수납장(해당 주택형),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현관 전신경 및 패널마감(해당 주택형), 현관 창고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 드레스룸 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 복도 창고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 복도 장식장(해당 주택형), 불박이장(해당 주택형), 발코니 선반류, 경량벽체 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물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전동빨래건조대 등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형 조명등기구, 욕실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장재(천장을 포함), 타일(바닥, 벽), 뒷선반,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샤워기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약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비상콜 및 비데(부부욕실)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전기오븐, 각종 빌트인 가전류, 주방액정TV,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배기 덕트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m<sup>2</sup>,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59.9049	63.2138	74.9140	84.9329	비 고
금액	18,275,000	19,196,000	21,958,000	24,681,000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가변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 할 경우 입주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추가선택 품목(옵션)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

1. 빌트인 가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업체명	판매가	비고
전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R-L712JCS(보급형)	LG전자	5,100,000	냉장고도어 패널마감 포함
		R-L692JYS(고급형)	LG전자	6,900,000	
59.9049	빌트인 감치냉장고	R-D222	LG전자	1,200,000	도어 마감 포함
63.2138 (키 큰 수납장형 선택시)				1,200,000	도어 마감 포함
63.2138 (일반 감치냉장고 수납장형 선택시)				1,500,000	키 큰장 및 도어 마감 포함
74.9140				1,500,000	키 큰장 및 도어 마감 포함
84.9329				1,500,000	키 큰장 및 도어 마감 포함
전주택형	빌트인 전기오븐	MZ 941CB (보급형)	LG전자	450,000	하부 서랍장 포함
		MZ 941CLC (고급형)	LG전자	700,000	
전주택형	빌트인 광파 하이브리드 쿡탑	BHH3YN	LG전자	750,000	전기 콘센트 포함

2. 불박이가구 등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불박이장	
--	------	--

주택형	각 실 별 판 매 가 격			현관 층문
	침실 1		침실 2	
59.9049	여닫이형	슬라이딩형	여닫이형(침실2_측면EP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알루미늄/5T브론즈유리 마감)
	1,850,000	2,500,000	730,000	
63.2138	여닫이형	슬라이딩형	여닫이형(침실2_측면EP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알루미늄/5T브론즈유리 마감)
	1,850,000	2,500,000	750,000	
74.9140	여닫이형	슬라이딩형	여닫이형(침실2_측면EP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알루미늄/5T브론즈유리 마감)
	1,900,000	3,000,000	750,000	
84.9329	여닫이형	슬라이딩형	여닫이형(침실2_측면EP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알루미늄/5T브론즈유리 마감)
	2,050,000	3,000,000	750,000	

※ 본공사시 해당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 도어 개폐방향, 가구도어 개폐방향, 서랍장 위치등 수납공간 구성은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시스템 에어컨

(단위 : m<sup>2</sup>,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위치 선택	업체명	판매가	비고
59.9049	ALT-1	거실(주방)+침실1	LG전자	3,3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2	거실(주방)+침실2		3,3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		4,5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3대
	ALT-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7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4대
63.2138	ALT-1	거실(주방)+침실1	LG전자	3,3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2	거실(주방)+침실2		3,3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		4,5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3대
	ALT-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7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4대
74.9140	ALT-1	거실(주방)+침실1	LG전자	3,4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2	거실(주방)+침실2		3,4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2대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		4,8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3대
	ALT-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3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4대
84.9329	ALT-1	거실(주방)+침실1	LG전자	4,6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3대
	ALT-2	거실(주방)+침실2		4,5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3대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		5,8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4대
	ALT-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200,000	에어컨 설치대수 : 5대

※ 공기청정 기능 추가 상품 희망시 설치 대수당 각 250,000원씩 추가하여 계약 가능함

### 4. 추가선택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옵션(별매품)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본인 가상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502-996164	주식회사 삼호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추가옵션 선택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형별로 별매품 설치후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배관용 냉매배관 또는 슬리브(냉매배관 미설치)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슬리브와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기존 냉매배관 또는 슬리브 및 콘센트(침실1, 거실)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존 냉매배관 또는 슬리브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해당타입 빌트인 광파하이브리드 쿨탑 판매가격은 기본품목(빌트인 가스 쿨탑 3구)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본 옵션 미선택시에는 빌트인 가스 쿨탑 3구로 설치됨

- 59형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미선택시 키 큰 수납장으로 설치됨

- 63형의 경우 김치냉장고 옵션선택시 키 큰수납장형 주방 선택세대는 키 큰 수납장내 빌트인 김치냉장고(도어 마감 포함)가 설치(수납공간 삭제)되며,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형 주방 선택세대는 빌트인 김치냉장고(도어 마감 포함)와 키 큰수납장이 설치됨

- 63형 세대가 키 큰수납장형 주방 선택후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을 미선택할 경우 세대 주방 및 다용도실내 별도의 김치냉장고 수납이 불가능함

- 74,84형의 경우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만 설치)으로 설치됨(가구도어 및 키 큰장 미설치)

- 빌트인 냉장고 선택시 상부장은 삭제되며, 냉장고 가격에서 차감하였음

-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해당 가구설치부위(바닥, 벽, 천장)의 최종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59,69,74,84형의 경우 자녀방(침실2)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 측면 EP마감이 설치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기타 유의사항

·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별도계약품목(추가선택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용(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한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해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상가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각단지의 특정세대에 합산하여 등기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보강도블럭, 조경용 석축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현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로 면적산정 후 각각의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되었고,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초등학생은 장유초등학교에 배치예정이며, 장유초등학교는 본 아파트에서 다소 원거리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초등학생의 등하교의 도움을 위해 입주자전용버스(25인승급) 2대를 제공함. 다만 버스의 운영은 입주민의 관리와 비용으로 운영되어야 함
-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시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주변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변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드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드록,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설치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입찰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드록 및 모형의 충분한 숙지 및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바람
- 당사의 분양홈페이지상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드록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보존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조경용조명 및 보안등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유무 및 설치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 홍보물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함

####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수 있음
- 분양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함
-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외벽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도로의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 램프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 시공시 사용자의 편의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시공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준공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세대는 일조 및 조망권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사업부지 동측에 35M 대로와 인접되어 있으며, 도로 반대편에는 장유무계택지개발예정지구에 버스터미널(환승장)이 예정되어 있어 차량 교통량에 따라 소음 및 매연 등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 및 외부계단에 의해서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및 소음등에 의한 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주차장(40대~근생포함)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법정크기(너비2.3M, 길이5.0M)이며,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확폭크기(너비2.4M, 길이5.0M)로 설치됨, 또한 일부 주차는 경형주차(너비2.0M, 길이3.6M)로 설치됨.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우수 배수시설, 저수조, 기계실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게시할 예정임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각동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화재시 자동폐쇄 장치에 의해 개폐가능한 창호는 최하 2개층 및 최상 2개층 총 4개소가 설치됨.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배치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으니, 건본주택내에 배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에 이으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통행로(1층 피로티 출입 포함) 등에 인접한 해당 동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다로그 단지배치도, 모형 등 참조)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치 및 개소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일부 위치 변경 및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소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및 내부 형태,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소공원)을 제외한 주변의 도시계획으로는 추후 김해시에서 설치 예정이며, 공사시작일정 및 기간은 김해시 행정일정에 따르며 당사업지의 준공시점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북측 소류3류는 폭8M미만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북측 도로경계선 2M 후퇴에 따른 현황도로 폭12M미만으로 계획되며, 추후 도시계획변경등에 따라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 서측 폭 4M도로는 기존 통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인근 주민들의 차량진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는 도로임
- 아파트의 대지레벨은 동측의 도로와 남측의 하천 독일과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기존구거 철거후 폭2M의 대체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물이 지하에 매설될 예정이니 관련(배치도)도서를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도로경계선과 인접하여 이전 설치되는 대체구거(농업생산기반시설)는 추후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의 보수, 보강등 유지관리상 필요시 대체구거옆 차폐수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등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실 윤곽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옥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벽 및 세대간 벽의 접합부위 등에 따라 단열설치 및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유효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관성,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단지배치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 바람
- 대피공간 및 에어컨 실외기실 바닥은 도장으로 마감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세탁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논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 됨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세대 내외부 창호(대피공간 창호 포함)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외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공사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님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이 설치된 세대중 3층 이상의 대피소 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시공되고 1층, 2층 세대는 별도 재질의 문이 설치될 수 있음
-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해당타입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에는 별도의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세대내 주방의 식탁등 위치는 본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됨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표시된 가스배관 위치는 본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본 단지와 인접한 주변 사업체와의 사이에 조정시설(조경수목 등)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 및 인접세대는 채광, 환기, 방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개소 및 종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59형의 경우 거실복도에 팬트리가 설치되며, 팬트리내 김치냉장고 수납이 가능하나, 일부 대형 김치냉장고(양문형, 대용량 스탠딩 제품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함
- 63형의 경우 계약시 주방가구 설치형태를 선택(키친 수납장형 또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형)할 수 있으며, 수납장 형태에 따라 가스쿡탑(가스배관 포함), 렌지후드 위치, 주방상판 길이 및 수납공간, 작업공간이 다소 변경되며, 키친 수납장형 선택세대의 경우 주방 및 다용도실내 별도의 김치냉장고 수납이 불가능함. 아울러 해당세대가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선택시에는 키친수납장내(내부 수납공간 삭제) 설치됨
- 59,63,74형의 경우 계약시 침실2,3간 가변형 벽체 설치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택형 침실간 가변형 벽체 미설치시(침실 통합)에도 침실 목창호는 모두 설치되며, 콘센트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됨
- 84형의 경우 계약시 거실, 침실2 간 가변형 벽체 설치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택형 거실, 침실2 간 가변형 벽체 미설치시 우물천장 디자인 및 침실2 천장등 디자인이 변경되며, 아울러 콘센트 수량 및 위치가 변경됨.
- 84형의 경우 계약시 주방 팬트리형 평면(건본주택 설치) 또는 알파룸형 평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알파룸형 평면 선택시 팬트리 및 망스오피스가 설치되지 않고, 복도장식장이 주방장식장(디자인 및 색상변경)으로 설치됨.
- 단지내 아파트 주동의 엘리베이터는 지상 25층 이하는 15인승(105m/min)의 기계실 없는 형으로 설계 및 시공되며, 엘리베이터 운행시 다소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세대의 방법을 위하여 발코니 외부에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하며, 최상층은 실내 내부에 동체 감지기를 설치함
-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집열판(11KW)의 설치위치 및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내에 설치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전 개설 완료 예정이며 다만 준공전 미개설시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로는 지상주차장 및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임
- 106동 후면에는 2개층의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일부저층세대),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주차장이 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106동 후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의 1층세대는 동측도로보다 레벨이 낮으며 이에따른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음
- 105동의 1층세대는 주민공동시설의 통행로에 위치하며 이에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음
- 104동 105동 인근에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수 있음
- 105동 인접하여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및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각종 설비의 운전시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인접하여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및 저수조 등이 설치되어 각종 설비의 운전시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단지의 건축물 입면 마감재료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설치예정이며, 석재 및 석재뿔침(지상1,2층)등 단지특화에 대한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남측 및 동측 대지경계부는 단지와의 레벨차에 의한 사면처리 후 조경석재 되며, 일부구간은 조경석 등이 설치됨

##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 고효율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 각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단위 : 원)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32,858,827,880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장 소재지
건축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1,294,652,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향로 54(양재2동 208)
전기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387,933,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소방	(주)케이아이씨	144,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4층 405호(삼산동, 미라쥬타워)
통신	(주)동도이앤씨	36,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석촌동) 석촌빌딩 2층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97,409,151,000	제01282016-101-0010000호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분양계약 이행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으로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전까지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이앤아이개발이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 ㈜이앤아이개발이고, 국제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국제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이앤아이개발 및 수탁자 국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임.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국제자산신탁(주)에게 청구할수 없음.
- 개별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겸 수익자인 ㈜이앤아이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됨.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이앤아이개발]의 수탁자[국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이앤아이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이앤아이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국제자산신탁(주)는 1개월 이내에 2회의 해약 최고 및 1회의 해약 통지를 통해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행자 : 국제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74271-0003383)

■ 시공사 : 대림산업(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84915) / 주식회사 삼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3115)

■ 위탁자 : 주식회사 이앤아이개발 (법인등록번호 : 174271-0003383)

■ 분양홈페이지 : [www.daelim-apt.co.kr](http://www.daelim-apt.co.kr) / [www.samhoapt21.co.kr](http://www.samhoapt21.co.kr)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298-7 ☎ 055-314-2800, 고객센터 080-535-3000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